

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칙

롯데정밀화학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롯데정밀화학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.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,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3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 단,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겨 이를 충원할 경우에 충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.

제 5 조 (해임)

- ① 위원의 해임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해임, 임기만료 또는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(제 3 조 제 1 항의 구성에 미달할 경우) 지체없이 결원을 충원한다. 다만, 신규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

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고,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운 영

제 6 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 소집시기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늦어도 24 시간 전에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, 기타 발송 및 착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 등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는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권 한

제 11 조 (권한)

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.

1. 내부거래 보고 청취권

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.

단, 『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』 대상 거래항목 중 50 억원 이상 거래는 이사회 부의 전 사전 심의하고, 그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는 내부거래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다.

2. 내부거래 직권 조사 명령권

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.

3. 내부거래 시정 조치 건의권

위원회는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의무)

위원회의 책임은 다음 각 항으로 한다.

1. 선관주의 의무

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.

2. 이사회에 대한 조사보고 의무

회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거래를 한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3. 의사록 작성의무

위원회는 회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의사록에는 점검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점검을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13 조 (보고의무)

위원회는 내부거래에 관하여 결의된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 15 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 16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附 則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